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08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재단법인 C
	4. D
	5. E
	6. F
	7. G
피 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들이 H 및 원고 A, B, 재단법인 C, D에 대하여 한 별지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 및 H에 대하여 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H(2016. 6.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원고 A, B,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D(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는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또는 주주이었던 자이다.

나. 2014. 9. 3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단 및 보유주식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	망인과의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비고
망인		-	-	
J	종손	429	0.14	특수관계인 (53.39%)
K	종손	429	0.14	
L	종손	429	0.14	
M	처조카	1,755	0.59	
N	조카	2,625	0.88	
O	사용인	7,354	2.45	
A	아들	105,980	35.33	
B	며느리	4,515	1.5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C	특수관계법인	15,000	5.0	
D	사위	3,720	1.24	
망 P	사위의 모친	17,914	5.97	
Q	-	9,700	3.32	
국민은행	-	30,000	10.0	
R	-	68,300	22.77	
S		12,000	4.0	
T		15,480	5.16	
U		4,370	1.46	
		300,000	100	

다. 망인은 2014. 10. 1.경 위 J, K, L, M, N, O, S, T, U(이하 'J 등'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이 보유하였던 주식의 합계 44,871주에 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주주	망인과의 관계	보유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비고
망인	본인	-	44,871	14.96	
J	종손	429	0	0	특수관계인 (64.01%)
K	종손	429	0	0	
L	종손	429	0	0	
M	처조카	1,755	0	0	
N	조카	2,625	0	0	
O	사용인	7,354	0	0	
A	아들	105,980	좌동	35.33	
B	며느리	4,515	〃	1.51	
C	특수관계법인	15,000	〃	5.0	
D	사위	3,720	〃	1.24	
망 P	사위의 모친	17,914	〃	5.97	
Q	-	9,700	〃	3.32	
국민은행	-	30,000	〃	10.0	
R	-	68,300	〃	22.77	
S		**12,000**	0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T		15,480	0	0	
U		4,370	0	0	
		300,000		100	

라. 피고들은 2016. 3. 14. 망인이 보유하게 된 위 44,871주 중 S, T, U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합계 31,850주(10.6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과점주주인 망인 및 특수관계인들(원고 D의 모친 P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D가 위 P의 납세의무를 상속)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망인 및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증가율(10.62%)만큼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별지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취득세(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망인 및 특수관계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5. 기각되었고, 위 감사원 심사 도중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A, E, F, G이 망인의 납세의무 등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S, T, U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서, 망인이 위 S, T, U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실질 소유자인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S, T, U로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식을 반환받은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두10872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2) 갑 제3 내지 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과 J 등은 '본 약정은 당사자 간 필요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함이고, J 등은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금의 실제적인 납입은 망인이 행하였음을 확인하며, J 등은 명의수탁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배당금 등을 실제 수령한 사실,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대가를 수령하지 않으며,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이 본래부터 망인의 소유이므로 주식의 보유에 따르는 세금 문제 등 제반 문제를 책임져 왔으며 해지 약정 이후에도 그러하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던 S, T, U는 이 사건 회사의 제36기부터 제41기까지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후, 이 사건 주식 등 위 J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4,871주에 대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당소득액을 망인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76,286,480원, 주민세 7,628,64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J 등을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0. 31.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 4,935,81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망인은 2016. 4. 11.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J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44,871주를 모두 증여하였고, 원고 A은 그에 따른 증여세 1,474,974,612원을 납부하였다.

3)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S, T, U에게 명의신탁해 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었던 것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인 망인 및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건 주식의 비율만큼 이 사건 회사의 재산(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S, T, U는 망인과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와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② 망인이 S, T, U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위 S, T, U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등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망인 및 원고 A과 S, T, U와의 관계(S은 망인의 조카인 V과 동서지간, T은 원고 A과 친구 관계, U는 이 사건 회사 창립 당시의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를 고려할 때, S, T, U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④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망인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망인의 배당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납부할 이유가 없다.

⑤ 이 사건 회사가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이 망인에게 '양도'가 아닌 '기타'의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주식이 망인에게 이전된 이후,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내지 양도받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았음을 전제로 과세당국이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거나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김용환

판사 엄지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순번	원고	피고(처분청)	처분일자	본세(취득세)	고지세액 (가산세, 농특세 포함)
1		사하구청장	2016. 3. 14.	13,355,320원	19,400,070원
2		서구청장	2016. 3. 17.	14,041,220원	20,402,110원
3		해운대구청장	2016. 3. 14.	621,780원	903,700원
4		사하구청장	2016. 3. 14.	570,800원	829,140원
5		서구청장	2016. 3. 17.	600,120원	871,960원
6		해운대구청장	2016. 3. 14.	26,470원	38,450원
7		사하구청장	2016. 3. 14.	1,890,080원	2,745,530원
8		서구청장	2016. 3. 14.	1,987,150원	2,887,340원
9		해운대구청장	2016. 3. 14.	87,970원	127,840원
10		사하구청장	2016. 3. 14.	2,725,490원	3,959,060원
11		서구청장	2016. 3. 14.	2,865,470원	4,163,560원
12		해운대구청장	2016. 3. 14.	21,850원	31,740원
13		해운대구청장	2016. 3. 14.	105,090원	152,720원
14		사하구청장	2016. 3. 14.	5,655,120원	8,214,670원
15		서구청장	2016. 3. 14.	5,945,560원	8,638,980원
16		해운대구청장	2016. 3. 14.	263,240원	382,590원
합 계				50,762,730원	73,749,46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